

---

# 안양캠퍼스 생활관 생활관 운영내규 및 선발기준

---

2024. 02.



# 생활관 운영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본교 생활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내규는 본교의 생활관에 한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지역 구분 및 지역 점수)** 지역 구분 및 지역 점수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.

**제4조(관생 선발기준 및 배정비율)**

① 관생 선발기준은 성적환산점수(직전 정규학기 평점 평균 \* 10, 45점 만점)와 지역 점수(55점 만점)의 합산으로 선발한다. 단, 학부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한하여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지역 점수만으로 선발하며 1급지, 2급지, 3급지 대상자를 우선 배정하고 4급지, 5급지, 6급지 대상자를 배정한다.

② 학년별 관생 정원의 비율은 우선 입사자를 제외한 잔여 인원 중 신입생, 재학생, 대학원생(신입생 포함)순으로 배정하고, 재학생의 학년별 정원 비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며,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원 자체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, 생활관에 명단을 제공한다.

**제5조(동점자 및 추가 선발기준)** 선발과정에서 동점자 및 미등록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

① 학부 재학생 동점자 발생 시 선발기준

1. 지역 점수
2. 직전 정규학기 평점
3.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
4. 직전 정규학기 이수 과목 수
5. 직전 정규학기 총점
6. 입학 년도 빠른 순

② 학부 신입생 동점자 발생 시 선발기준

1. 평균 통학 시간이 가장 먼 지역 신청자

**제6조(입사자격 제한)** 입사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.

1. 유기정확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2.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
3.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4.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7조(우선 입사 대상 및 자격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입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※ 우선 입사자 대상자는 선발 기간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행정실로 보내야 한다(우편, 방문, fax)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2. 차상위 계층
3. 장애인

**제8조(방학 중 운영)**

① 방학 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입사 대상은 신청자 중에서 해당 학기 관생을 우선 선발하고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신청·선발하며, 부수적인 사항은 학기 중에 적용된 운영내규를 따른다.

③ 방학 중 본교 행사와 관련된 외부인이 사생실을 사용 시 관리비는 별도로 정한다.

**제9조(입사제출서류)** 생활관에 입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생활관장의 요청 시 감염병 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결핵 검진 결과서 1부
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3.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4. 장애인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**제10조(퇴사조치)** 퇴사조치 기준은 관생생활수칙 및 모집안내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11조(관생생활수칙)** 생활관의 관생들은 항상 학구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,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별도로 정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관생납부금 반환)** 생활관 거주기간 중 개인 사유 및 군입대, 질병 등으로 중도퇴사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관생납부금 반

환을 원칙으로 한다.

① 관리운영비 : 1학기 6월, 2학기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잔여 일수만큼 반환

② 입사보증금 : 비품 분실 및 파손이 없을 경우 전액반환

(단, 비품 파손 시 보증금에서 공제 후 차액 반환 및 추가비용 발생 시 관생 부담)

③ 방학 중 관생납부금 반환

- 4주 이내 퇴사 신청자

- 신청자에 한해 잔여일수 관리운영비 반환 단, 입사보증금은 학기와 동일 적용

※ 개인사유(휴학, 자퇴, 군입대, 질병, 징계 퇴사)는 관생납부금 반환 기준 동일 적용

④ 생활관 입주생 중 공식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도퇴사 시 관생납부금 환금액에서 위약금을 추가로 공제 후 반환한다.

※ 위약 금액은 관생납부금 1/5로 공제, 위약금 공제 후 4/5 환금

**제13조(규정준용)**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「생활관 운영규정」 및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(별표 1)

생활관생 선발을 위한 지역 구분 및 지역 점수

구분	평균 통학시간	지역	점수
1급지	3시간 초과	비수도권, 해외 전 지역	55
		[경기] 연천군(3:20)	
2급지	3시간	[인천] 강화군(3:10)	54
		[경기] 양평군(2:41), 포천시(2:54),	
3급지	2시간30분	[경기] 양주시(2:15), 의정부시(2:20), 남양주시(2:13), 동두천시(2:33), 여주시(2:17), 안성시(2:24)	53
4급지	2시간	[인천] 옹진군(1:45), 계양구(1:41), 중구(1:49)	52
		[경기] 광주시(1:43), 이천시(1:57), 고양시(2:02), 화성시(1:49), 하남시(1:46), 구리시(1:57), 평택시(1:42), 김포시(1:51), 가평군(1:58), 파주시(2:07),	
		[서울] 중랑구(1:54), 도봉구(1:57), 노원구(1:59), 강북구(1:43)	
5급지	1시간30분	[인천] 부평구(1:20), 서구(1:32), 남동구(1:36), 동구(1:35), 연수구(1:33), 미추홀구(1:28)	51
		[경기] 성남시(1:15), 오산시(1:23), 안산시(1:27), 부천시(1:13), 시흥시(1:19), 용인시(1:40),	
		[서울] 성동구(1:30), 종로구(1:19), 중구(1:20), 용산구(1:24), 강남구(1:32), 서대문구(1:31), 강서구(1:27), 마포구(1:12), 강동구(1:31), 송파구(1:28), 동대문구(1:28), 광진구(1:34), 성북구(1:37), 은평구(1:38), 관악구(1:11), 구로구(1:12)	
6급지	1시간	[경기] 의왕시(0:59), 안양시(0:39), 군포시(0:41), 과천시(0:47), 광명시(0:58), 수원시(1:03)	50
		[서울] 금천구(0:36), 영등포구(0:56), 동작구(1:01), 양천구(1:03), 서초구(1:10)	

※ 평균 통학시간 산출 기준

- 네이버 길찾기 대중교통 최적경로 기준 (KTX, ITX 등 특급 열차편 제외)
- 출발지 : 해당지역 시청/군청/구청
- 도착지 : 안양대학교 안양캠퍼스
- 출발시각 : 월요일 오전 07:00 출발
- 30분 단위로 산출 (10분 이내 절사, 11분~29분/ 41분~59분은 30분으로 올림)
- 산출 기준일 : 2023.01.02.(월)